

청주교육대학교-부설초등학교 협력위원회 규정

제정 2010. 11. 15. 제125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(이하 '부설학교'라 한다) 간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협력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대학에서는 교육지원과장, 교육연구원장, 교육실습센터 전담교수, 부설학교는 교감, 교무부장, 교육실습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8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교육 실습제도 운영
2. 수업 및 교육 실천 개선
3. 각종 현장 연구 및 연수
4. 대학과 부설학교의 공동 발전
5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.

1. 총장 또는 부설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2.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 (2010. 11. 15. 규칙 제125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